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 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단서 규정인 "단,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항 제1호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중 "주차요금 산정은 제2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을 "주차요금 산정은 제2항 규정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구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	
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	
한다. <u>단,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u>	<단서 삭 제>
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에서 유	
<u>예기간을 둘 수 있다</u> .	
1.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를 사용하지	1.<삭 제>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	
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	
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롸하	
고, 이후 계혹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	
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10. (생략)	2.~10.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	③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	
과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산정은 제2	<u>주차요금 산정은</u>
<u>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u> 준용한다.	<u>제2항의 규정을</u> 준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주차 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부과하는 것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 4시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부과하는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이자, 주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수취할 위험성이 있 음
- O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 항목으로 삭제

□ 주요내용

- O 주차요금 및 가산금(제2조)
 -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개 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로 인하여 도심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생략>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로 인하여 도심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1 () 11 2 1 11 ()	フ	개정	0	유	밓	주요	ใ나	용
--------------------------	---	----	---	---	---	----	----	---

□ 개정이유

○ 우리구는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2-1호(2012.9.21.)에 의 거 전구역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화조 야간청소 지시 지역에 해당되는 바, 제한구역외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정비코 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삭제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로 인하여 도심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 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0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이사회) 제2항 중 당연직 이사 순서인

- "1. 구청장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사장"을
- "1. 구청장 2. 사장 3. 행정관리국장 4.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대상범위, 기간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조사, 검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이사회)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 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 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 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사장	제9조 (이사회) ②
제16조 (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은 재 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대상범위, 기간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조사, 검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O 중구문화재단 직무수행 및 업무관리의 효율성 증대
│ │
가. 제9조(이사회) 제2항 개정
당연직 이사의 순서를 ' <u>구청장, 사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u> '으로 개정하
여, 충무아트홀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하고자 함
나. 제16조(보고,검사,감사) 개정
사전 통보 조항 및 조사자 신분증 제시 조항의 미비에 따라 지도, 점검 등
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함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보 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1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방보조금"이란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 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④ 구청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

- 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연직 위원 : 각 국·소장 중 3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개최 시 업무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자
-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촉직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국·소의 부서장 중에서 업무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⑦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1.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2.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7.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국·소별로 개최하며 국·소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행정 관리국 소속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보존사업 기간
 -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 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

- 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 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 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

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 나.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 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 주요내용

- 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12조)
-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3조~제30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 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대부료의 감면)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시설
 -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0조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4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의 "데"를 "에"로 바꾼다.

제8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1(변상금의 징수유예)

구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를 한 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3조(변상금 징수유예 적용례) 제88조의1의 규정은 2014. 7. 8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대상)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산의 위치·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行 付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대면말 두 있다. 1.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 류표에 따른 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u> </u>	2.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u>연구시설</u>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 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1항 <u>데</u>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의1(변상금 징수유예) 구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를 한 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기	ାଧ	0	0	및	ス	ΟI	Н	Ω
/	ľÖ	_		え	т.	<u> </u>	-11	$\overline{\mathbf{o}}$

□ 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관리로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지명경쟁방법 추가 도입: 제18조의 3 신설
- 나.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기준 확대 : 제30조 본문 개정
 - 전년대비 10% 초과분 → 5% 초과분
- 다. 매수대금의 분납이자 부가시점 명확화 : 제34조 제1항 단서 신설
 -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점유·사용 시 이자 부가
- 라. 무단점유자 변상금의 징수유예 등 근거마련 : 제88조의 1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1. 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장려)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
 -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 4. 근로자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

- 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フ	내장	Οļ	유	및	주.	유L	ㅐ쳥	_
	11 C)		ス			ט וי	,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 제5조 생활임금결정
- 제7조 생활임금 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등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성 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4호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 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세"라 함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 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
 -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1. 성실납세자
 -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4.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6. 충무아트홀 공연료 할인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 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조례 제1245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65만원"을 "월 27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신 · 구조문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생 략)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u>월 265만원</u> 으로 한다.	월 270만원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조~제7조(생 략)	제4조~제7조(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관련 조
례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월 265만원"을 <u>"월 270만원"</u> 으로 변경 함(안 제3조제1항)
9 2010 2 200 CC 2 <u>2 270 CC</u> — 1 CO G(C 110 12 11 10)